

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인지확인서

1.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지화지원사업 참여업체가
 - (1)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(2) 법령을 위반한 경우 (3)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
 - ① 지원업체는 지급한 보조금(사업 정산금액)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반환해야 하며
 - ②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
 - ③ 다른 중앙관서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이 제한됩니다.
2.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사업계획 등을 위반하여 국고보조금 부당수령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공사에서 해당사항의 사실 관계 확인 요청 할 수 있으며, 보조금 지원 사업자는 관련자료 제출 등의 요청에 협조하겠습니다.
3.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공사 사업계획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사가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
〈보조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부과〉

[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]

제31조(보조금의 반환)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.

제33조의2(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·징수)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·징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·과료, 몰수·추징,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·삭감 또는 변경·취소할 수 있다.

1.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

[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]

제14조의2(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·징수의 기준 등) ①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재부가금(이하 "제재부가금"이라 한다)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.

<별표5>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(제14조의2제1항 관련)

1.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.

제재부가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	위반행위	제재부가금 부과율
나.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간접보조사업자	1)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	500%
	2)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	300%
	3) 법령을 위반한 경우	200%

년 월 일

지원업체명 :

대표자 :

(인)

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귀하